	업통상자원부
--	--------

보도자료



http://www.motie.go.kr

2020년 1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월 12일(일) 11:00부터 보도 가능)

[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월 12일(일) 11:00부터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20. 1. 10.(금)	담당부서	에너지효율과	
담당과장	유성우 과장(044-203-5140)	담 당 자	박현호 사무관(044-203-5143)	

겨울철 "문 열고 난방영업" 단속한다

-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~300만원 부과 -

- 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'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'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(월) 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음.
-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('19.12.1.~'20.2.29.)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,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"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"를 계도하고 있으며,
- **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**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**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**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음.
- □ 산업부는 지자체,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**합동 점검반을 구성**하여 해당 기간 동안 **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**하여,
-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,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
 - * (최초)경고 → (1회)150만원 → (2회)200만원 → (3회)250만원 → (4회 이상)300만원
- 한편,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^{*}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음.
 - * 의견 제기 절차 :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(서면제출 등) 가능

- □ 산업부는 **1월 넷째 주 이후에도**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**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할 예정이라고 밝히고,
-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%의 난방전력 절감^{*} 효과가 있는 만큼, 이번 **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**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.
 - *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 : 내부온도 22℃, 외기온도 -2℃ 가정,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.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,871W보다 91.9% 절감 가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투 에너지효율과 박현호 사무관(☎ 044-203-51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